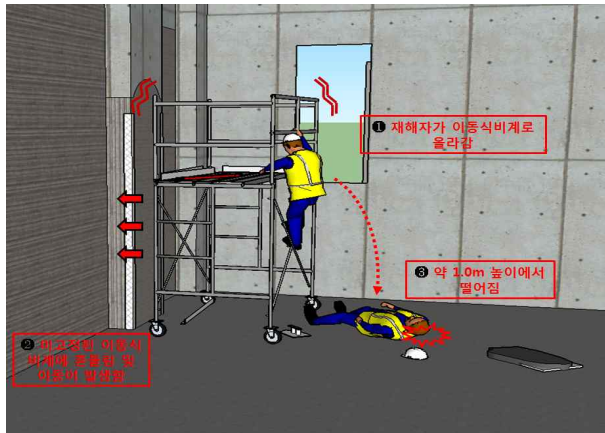




재해 개요

- 2018.9.7(금) 경기 시흥시 은행동 소재 ○○건설(주)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○○○○ 소속 작업자(미장공)가 사회복지관 지상 4층 내부 벽체의 모서리 비드 설치를 위해 이동식비계에 오르던 중 약 1.0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



재해 발생 원인

- 이동식비계 아웃트리거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 실시**
 - 이동식비계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(outrigger)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아웃트리거 등 미설치로 인해 이동식비계가 움직임
- 보호구 미지급,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실시**
 -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하나 미지급 및 미착용 상태로 작업 중 추락 발생



재해 예방 대책

- 이동식비계 아웃트리거 설치 철저**
 - 이동식비계 상부로 승강하는 것과 같이 이동식비계에 갑작스러운 하중이 가해질 경우 이동식비계가 움직이거나 흔들릴 수 있으므로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불시 이동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
-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지급 및 관리 감독 철저**
 - 이동식비계로 승강하는 경우 올라가는 과정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모를 지급하고, 올바르게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함

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, 직영, 하청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